



K-Beauty Festa in Japan 참가신청서

산업통상자원부



(사)K-뷰티산업협회

참가 기업 정보

업체명	(국문)	(영문)	
사업자등록번호		대표자	
주소			
홈페이지			
담당자	성명		직위
	부서		연락처
	이메일		FAX

부스신청 및 제공사항

구분	부스종류	금액	협회지원(40%)	실입금액	신청여부
신청부스 (✓표기)	일반 부스 A	1,400만원	560만원	840만원	
	일반 부스 B	1,200만원	480만원	720만원	
	일반 부스 C	1,000만원	400만원	600만원	
	진열형 양방형	500만원	200만원	300만원	
	진열형 벽면형	500만원	200만원	300만원	
VIP 부스*	VIP 부스			1,650만원	
※ VIP 부스는 행사 전 2주간 백화점 1층 특별부스코너를 운영 (5개업체 선착순) ※ 10/8~10/22 백화점 1층 특별부스, 10/23~10/27 일반부스 A형 운영					
부스통역	행사기간 중 부스운영 통역 신청 여부 (별도비용 발생)	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/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제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시부스 (부스형별 기본 진열대 및 상담테이블 및 의자) ○ 업체명 간판 (참가기업로고 ai파일 제출) / 전기(110V) 및 기본제공 사항 ○ 추가 간판(상단 / 규격 150cm×60cm) 제공, 개별 제작 				
입금계좌	국민은행 913101-00-010605 예금주 : K-뷰티산업협회 장창남				

본사는 참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.

신청일 : 2025년 월 일 대표자 : (인)

K-BEAUTY FESTA in JAPAN 업무계약서

본 계약서는 상호협력을 통해 K-BEAUTY FESTA 행사 참여와 그와 관련한 홍보, 제품소개, 유통 및 뷰티 관련 민간 교류 등 행사 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1조 용어의 정리

- “행사”라 함은 2025년 K-BEAUTY FESTA를 말한다.
- “참여기업”은 본 행사 기업부스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 및 계약서 작성은 진행한 회사, 단체를 말한다.
- “협회”라 함은 K-뷰티산업협회를 말한다.

제2조 참가계약

- 참가계약은 참여기업이 참가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참가계약서에 서명날인 후 즉시 참가 계약이 성립되며 협회와 참여기업은 계약조항에 따른 참가준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.
- 참가계약서 서명날인 후 3일 안에 참가비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참가승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전 1항의 참가계약 체결된 후 상호 합의된 합당한 사유없이 참가비 납입이 지체될 경우 협회는 참가계약을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.

제3조 참가비, 추가 납부

- 참가비의 납부기한은 참가계약서 서명날인 후 3일 이내이다.
- 원활한 행사진행과 편익을 위해 협회에서 안내하는 항공, 호텔, 물류 등을 이용할 경우 추가납부가 발생하며 신청마감일과 추가납부기한은 별도로 공지, 통보한다.

제4조 부스배정 및 운영

- 협회는 참가계약체결과 참가비 납입순으로 부스 위치를 신청에 따라 배정한다.
- 행사기간 중 부스운영시간은 10시30분부터 19시까지이며 단, 행사마지막날(10월27일)은 17시까지 운영을 마무리해야 하고 참여기업은 부스운영 지연 및 단축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협회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 보안 및 안전

- 협회는 참여기업과 관람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장 경비를 운용하나 참여기업의 모든 물품의 도난, 파손,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.
- 판매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책임을 부담한다.

제6조 전시품제한 및 부스재임대 금지

- 참여기업은 사전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협회는 행사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- 참여기업은 협회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된 공간에 타사의 제품을 전시하거나 전대 또는 할당할 수 없다.
- 전 2항을 어긴 경우 협회는 즉시 퇴실 조치되며 납부한 참가비를 위약금으로 징구한다.

제7조 참가취소에 따른 위약금

- 협회는 참가비 납부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차감하고 취소신청 후 10일 이내에 반환한다.

[2025년 8월 31일 이전 취소 : 참가비 10%를 위약금으로 공제]

[행사 45일 이전 취소 : 참가비 50%를 위약금으로 공제]

[행사 30일 이전 취소 : 참가비 80%를 위약금으로 공제]

[행사 30일 이후 취소 : 참가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]

제8조 해약

- 협회는 다음의 경우 일방적으로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참여기업이 참가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
 - 참여기업의 일방적 의사로 참가를 취소하거나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거부할 때
 - 참여기업이 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행사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
- 전 1항 2), 3)조에 해당되는 계약해지 시 참여기업이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-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행사 개최일 또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행사 규모축소 및 행사

제9조 정산

- 정산은 협회가 일괄적으로 참여기업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.
- 정산방식은 백화점의 정산방식을 따르며 정산내용은 행사 중 참여기업의 직접확인을 원칙으로 한다.
- 백화점 정산기준은 행사마감 후 40일 이후 결산을 통해 이루어진다.

제10조 개정

본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상호 활동에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, 서면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, 시행키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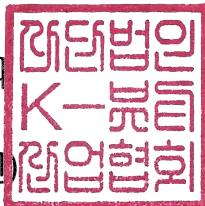
위와 같이 계약서의 성립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며,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양측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25 년 월 일

“협 회”

사단법인 K-뷰티산업협회

회장 장창남 (인)



“참여기업”

주식회사

대표이사

(인)